

## 2023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판로지원사업오프라인 2차 모집공고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오프라인 판로지원을 통한 매출활성화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지원사업(오프라인)」 참여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소상공인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4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유의사항

- ①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혹은 전문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취소로 간주
- ② 선정 이후, 박람회 무단 불참 등 사업 진행간 불성실한 태도의 협동조합은 추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판로지원사업 신청·평가시 감점 적용
- ③ 선정조합은 사업기간(~23.12.31) 내에만 지원 가능하며, 사업기간 이외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불가
- ④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 연락불가, 협약서 내용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은 공단(혹은 전문기관)에서 지지 않음
- 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신청,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재조치 및 민·형사소송 가능
- ⑥ 사업 중도포기 시, 당해 연도 포함 향후 2년간(~25년) 사업 지원 불가
- ⑦ 정부 지원 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
- ⑧ 사업신청서 및 제출 증빙서류 등 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⑨ 조합은 추후 공단 요청 시, 협동조합 현황정보 제공 의무 있음. 미 준수 시 선정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홈페이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www.semas.or.kr>  
[소상공인마당] <http://www.sbiz.or.kr>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http://coop.sbiz.or.kr>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유명박람회 입점 지원, 유통상담회, O2O 연계지원 등 오프라인 판로지원을 통한 협동조합 자립발판 마련 및 유통활로 모색
- 사업기간 : '23. 5월 ~ 12월
- 사업규모 : 약 11억원 내외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http://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4. 25.(화) ~ 5. 8.(월), 18:00
-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sup>1)</sup>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sup>2)</sup>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sup>3)</sup> 등<sup>4)</sup>
  -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 3)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15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 4)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만료되어 최근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법 및 그밖의 법령으로 설립된 법인
- 지원내용 : 성장단계별 맞춤형 오프라인 판로\* 지원
  - \* 박람회 입점, 홍보, 바이어상담회, 해외 박람회 참여 등

## 2 신청요건 및 지원내용

□ 신청요건 :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별 신청

구분	구성요건	
(공통조건)	·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 * "[참고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기준" 참조	
초기단계	필수요건	· (업력) 설립 1~3년차 : '20.01.31~'23.01.30까지 설립 조합
성장단계	필수요건	· (업력) 설립 4~6년차 : '17.01.31~'20.01.30 설립 조합
	선택요건 (①~③번 中 택1)	① 조합원 10인 이상 ② 전년대비 매출 5% 이상 증가 ③ 전년대비 고용 5% 이상 증가
도약단계	필수요건	· (업력) 설립 7년차 이상 : '17.01.31 이전 설립 조합
	선택요건 (①~③번 中 택1)	① 조합원 20인 이상 ② 최근3년 이내 매출 10%이상 증가 ③ 최근3년 이내 고용 10%이상 증가

\* 단, 공동사업 기지원 조합('22년~)은 필수요건 충족시(선택요건과 무관) 신청 가능

\*\* "초기단계"이면서 판로 실적 1천만원이상 우수조합은 "성장단계" 신청 가능

### □ 참여제한

○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신청 제외 대상]
▶ 협동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1)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하나의 조합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
▶ 최근 1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이력 및 수사 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제재(환수조치 이상)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소상공인협동조합 판로지원사업 중도포기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 (지원제외) 사행성·미풍양속을 해치는 상품성·안전성 미확보 상품

□ 지원내용 : 성장단계별 맞춤형 온라인 판로 지원

- (공통) 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온·오프라인) 5H 이수 필수

구분	세부 지원내용	< 단계별 >		
		초기	성장	도약
오프라인	- 유명박람회 입점 지원 - 박람회 참여 관련 선행교육 및 판로교육 - 족자봉, 홍보배너 제작 등	√	√	√
	- 초기단계 세부 지원내용 포함 - 바이어 상담회 지원, O2O연계지원		√	√
	- 성장단계 세부 지원내용 포함 - 해외 수출 역량강화 컨설팅			√

○ 세부 지원내용

- (초기단계) 교육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등 협동조합 판로 지원

#### <초기단계 오프라인 판로지원 세부내용>

(단위 : 천원)

구분	세부내용
초기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람회 참여 관련 선행교육 및 판로교육</li> <li>· 족자봉, 홍보배너 제작*</li> <li>· 유명박람회 입점* 관련 비용지원</li> <li>- 운영비용 : 숙박 및 식비, 부대시설 사용비 등 지원</li> <li>· 홍보 및 프로모션 행사 진행</li> <li>· 디렉토리북 배포, X-배너 제작 등</li> </ul>

\* '22년 소상공인협동조합 오프라인 판로지원 기지원 협동조합 제외(중복지원)

\*\* 박람회 입점은 공동사업(마케팅\_박람회 참가)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규모 및 추진사업 세부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성장단계) 박람회 입점, 바이어 유통 상담회, O2O연계지원 등

**<성장단계 오프라인 판로지원 세부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내용
성장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기단계 지원내용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람회 참여 관련 선행교육 및 판로교육</li> <li>족자봉, 홍보배너 제작</li> <li>유명박람회 입점 관련 비용지원</li> <li>- 운영비용 : 숙박 및 식비, 부대시설 사용비 등 지원</li> <li>홍보 및 프로모션 행사 진행</li> <li>디렉토리북 배포, X-배너 제작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이어 유통상담회 개최</li> <li>- 국내 유명 MD와 1:1 매칭 프로그램 운영</li> <li>박람회 연계 협동조합 전용 온라인 기획전 운영(O2O 연계)</li> </ul>

\* 지원 규모 및 추진사업 세부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도약단계) 해외 연계(유통상담회 등) 지원, 수출 역량 및 활로 모색

**<도약단계 오프라인 판로지원 세부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내용
도약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기단계 지원내용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람회 참여 관련 선행교육 및 판로교육</li> <li>족자봉, 홍보배너 제작</li> <li>유명박람회 입점 관련 비용지원</li> <li>- 운영비용 : 숙박 및 식비, 부대시설 사용비 등 지원</li> <li>홍보 및 프로모션 행사 진행</li> <li>디렉토리북 배포, X-배너 제작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장단계 지원내용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이어 유통상담회 개최</li> <li>- 국내 유명 MD와 1:1 매칭 프로그램 운영</li> <li>박람회 연계 협동조합 전용 온라인 기획전 운영(O2O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수출지원 연계(번역 지원, 컨설팅 등)</li> </ul>

\* 지원 규모 및 추진사업 세부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3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op.sbiz.or.kr)

①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sbiz.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 "[참고8]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방법" 참조

②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 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

- 사업신청 시, 조합유형을 선택하고 사업신청(조합 정보 등) 및 증빙서류 스캔 등록

□ 제출서류

제출서류	검토사항	제출범위
		협동조합
작성서류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신청화면 內 "자가진단" 체크	협동조합
	(2) <서식1> 사업계획서	협동조합
	(3) <서식1-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조합원 전원
	(4) <서식1-2> 사업 참여 협약서	등기임원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하여 '제출용'으로 발급 - 등기임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함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협동조합
사업자 등록증명	- 소상공인이 아닌 조합원(자연인)의 경우 제출 제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협동조합, 조합원 전원

제출서류	검토사항	제출범위
		협동조합
소상공인 확인서류	- (권장)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가능)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매출액 확인서류 <참고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사업자가 없는 조합원(자연인)의 경우 제출 제외	조합원 전원
세금납부 확인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 - 신규 설립으로 제출 불가 시 등기임원 전원 제출	협동조합, 이사장
조합원 명부	- 발기인, 성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필수 -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 기되어 있어야함 - 신청일 기준 조합원 전원 확인 가능 명부	협동조합
매출증빙 서류	- 표준재무제표* 제출 * 표준재무제표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이 어려울 경우 (일반과세)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으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성장/도약단계) 선택요건 해당 시 제출
	- (성장단계) 최근 2년 표준재무제표 * '21년 대비 '22년 매출 5%이상 증가 조합 - (도약단계)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 * '20년~'22년 기간 동안 매출 10%이상 증가 조합	
고용인원 확인서류	(추천서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내역(오프라인 발급) - (성장단계) 최근 2년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21년 대비 '22년 고용인원 5%이상 증가 조합 - (도약단계) 최근 3년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20년~'22년 기간 동안 고용인원 10%이상 증가 조합	(성장/도약단계) 선택요건 해당 시 제출
가족관계 증명서	- 협동조합 이사장(연합회의 경우 연합회 대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협동조합 이사장
기타서류	- 기타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협동조합

\* 신청기한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대상 조건이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참고9] 제출서류 발급처" 참조

## 4 평가·선정방법

□ 평가·선정방법 : 서류검토(보완) → 선정평가 → 결과통보

① (서류검토) 사업계획, 증빙 등 제반서류 누락 및 흠결여부 등 검토

- 협동조합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요청 및 반려처리

< 서류검토 후 처리방법 >

구분	처리조건	후속조치
접수	-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는 경우	- 선정평가 등 향후 추진 일정 안내
보완	-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 누락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 보완사항 안내 * 보완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 보완, 미 보완시 탈락. 단, 부득이한 경우 보완기한(3일 이내)을 연장할 수 있음
반려	- 자격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반려(탈락)사항 안내

② (선정평가) 추후 전문기관에서 선정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 진행

- 평가항목 : 상품경쟁력, 매체적합성, 가격적정성 등

③ (결과통보) 홈페이지 신청 결과 확인 및 전문기관 이메일 개별 통보

## 5 문의처

구분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사업문의	(사)한국전시산업진흥회	융합전시사업팀	02-554-2078, 02-574-207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 협업지원팀	042-363-7928

(서식) 1. 2023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판로지원사업(오프라인)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2023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판로지원사업(오프라인) 참여확약서

# 참고1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외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1.12)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sup>2</sup>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희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희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용자 허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참고2

###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확인 기준

#### 1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sup>①</sup> 중 소상공인<sup>②</sup>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sup>③</sup>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②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③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2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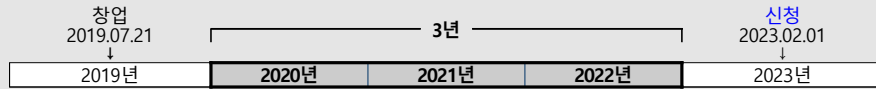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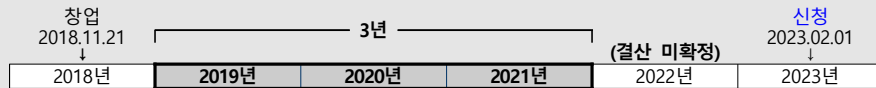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table border="1"> <tbody> <tr> <td>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td> <td>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td> </tr> <tr> <td>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td> <td>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td> </tr> <tr> <td>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td> <td>창업일·합병일·분할일로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td> </tr> </tbody> </table>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로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로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예시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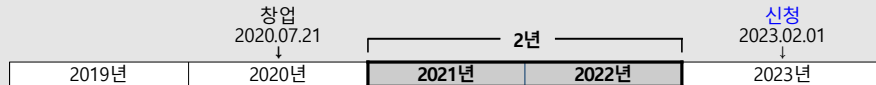


☞ 평균매출액등 : (2020년~2022년 매출액 합계)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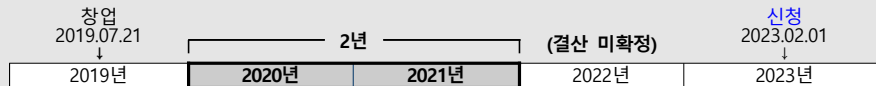


☞ 평균매출액등 : (2019년~2021년 매출액 합계) / 3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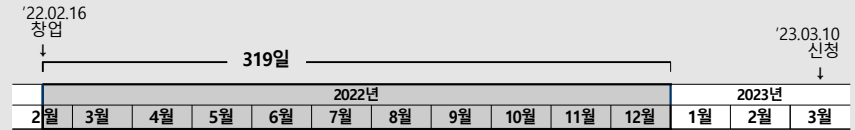
☞ 평균매출액등 : (2021년~2022년 매출액 합계) / 2



☞ 평균매출액등 : (2020년~2021년 매출액 합계) / 2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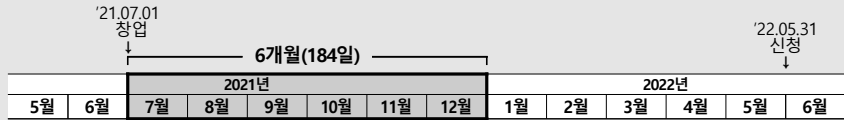
☞ 평균매출액등 : '22.02.16~'22.12.31 매출액(A) 연환산 ( = (A/319일) × 365일 )



☞ 평균매출액등 : ① +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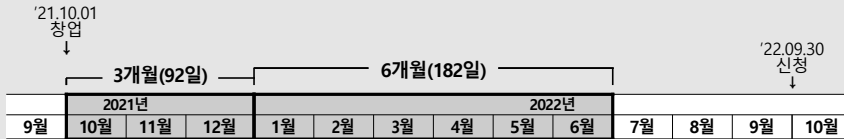
- ① '22.08.16~'22.12.31 매출액(A) 반기환산 ( = (A/138일) × 184일 )
- ② '23.01.01~'23.06.30 매출액(B) 반기환산 ( = B )

<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



☞ 평균매출액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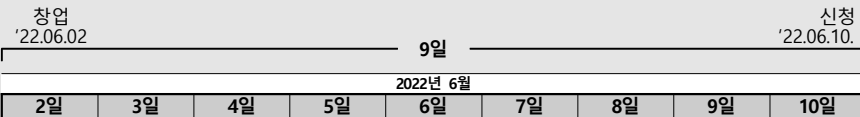
: '21.07.01~'21.12.31 매출액(A) 반환산 ( = ( A × 2 ) or { (A/184일) × 365일 } )



☞ 평균매출액등 : ① + ②

- ① '21.10.01~'21.12.31 매출액(A) 반환산 ( = ( A × 2 ) or { (A/92일) × 184일 } )
- ② '22.01.01~'22.06.30 매출액(B) 반환산 ( = B )

<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



☞ 평균매출액등 : ( (2022년 6월 2일 ~ 2022년 6월 10일 매출액 합계) / 9일 ) \* 365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사례

**2018년 창업한** A기업은 음료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2019년~2021년** 3년간 평균매출액은 110억원(음료제조업 분야에서 70억원, 도매업 분야에서 40억원)임. **2022년 6월에 지원신청한 A기업의** 소기업 해당 여부는?

**1 주된 업종 판단**

70억원(음료제조업)과 40억원(도매업)을 비교하여,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주된 업종에 해당함  
 ⇒ 음료제조업이 주된 업종

**2 매출액 기준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라, A기업의 소기업 여부 판단에 적용할 업종은 '음료제조업'임을 확인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3 규모기준 충족여부 확인**

3년 평균매출액 110억원과 업종별 기준인 120억원을 비교  
 ⇒ 규모기준을 충족

**4 소기업 적용기간 확인**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므로 직전 사업연도 말일(2021.12.31.)에서 3개월이 경과한 '22년 4월 1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에 해당  
 ⇒ 적용기간 충족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5.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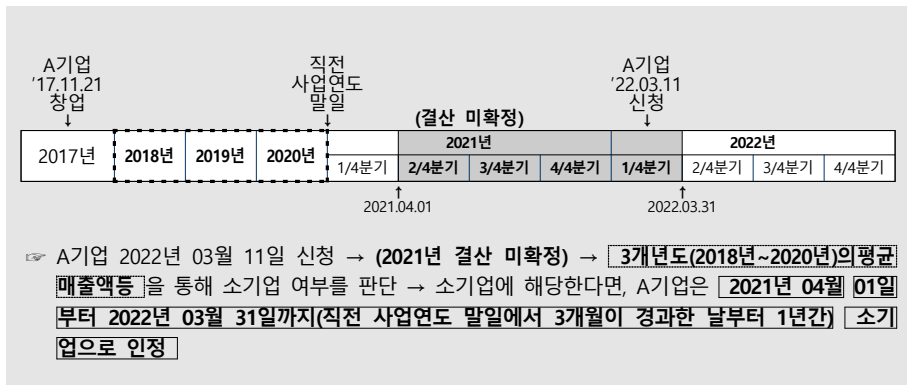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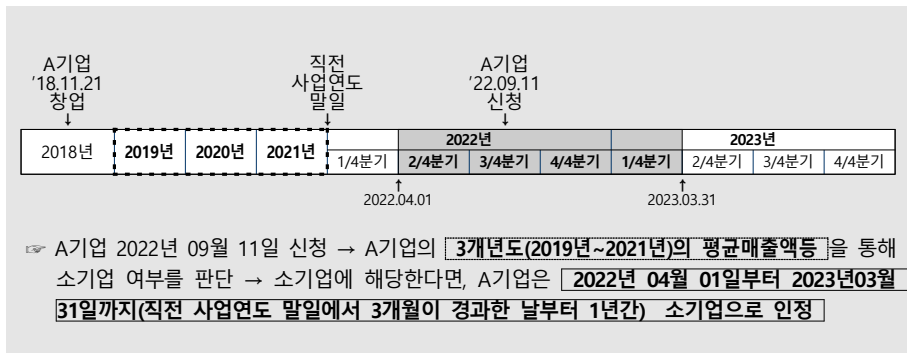
○ (소기업 해당여부 적용기간)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②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한 경우	
③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경우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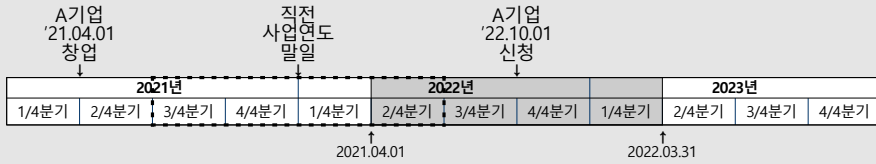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소기업 여부 적용기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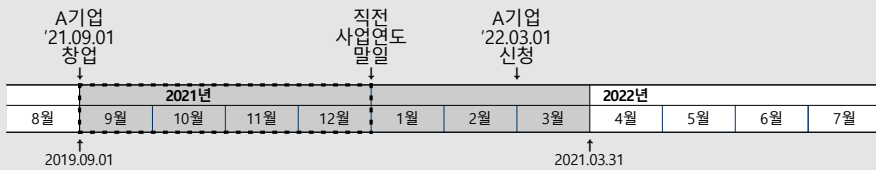
①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 ②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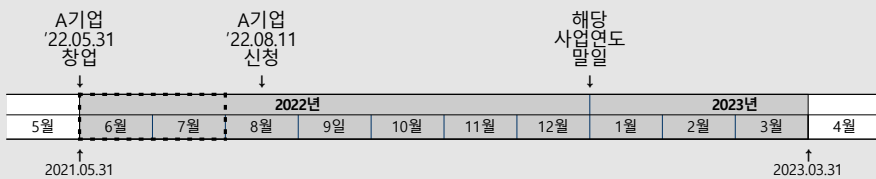


☞ A기업 2022년 10월 01일 신청 → 2021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06월 30일까지 계산한 평균 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2년 04월 01일부터 2023년 03월 31일까지(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 소기업으로 인정



☞ A기업 2022년 03월 01일 신청 → A기업 창업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을 환산한 평균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1년 09월 01일부터 2022년 03월 31일까지(신청일이 직전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창업일부터 창업한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 ③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경우



☞ A기업 2022년 08월 11일 신청 → A기업은 같은 해 2022년 05월 31일에 창업 → A기업의 2022년 6월~7월 매출액을 환산한 평균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를 판단 →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A기업은 2022년 05월 31일부터 2023년 03월 31일까지(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 ③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종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②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참고사항>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
임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 등기된 이사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이외의 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자(개인사업자는 사장) 또는 무급 가족종사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자 중 무한책임사원 및 업무집행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일용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상시근로자임
연구전담요원	기업 내 조직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인증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단시간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에서 60시간/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1명을 0.5명으로 하고, 60시간/월 미만인 자는 0명으로 함 ※ 고령화 시대 및 다양한 일자리 형태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012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이 제외되었음

㉓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지원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22. 11. 20	'23. 1. 31	(직전 사업연도) '22년 1월~'22년 12월
예시2	'22. 2. 5		(최근 12개월) '22년 3월~'22년 12월

#### ④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 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 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희(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p>■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21.3.26 지원 신청할 경우, 2020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p> <p>■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19년 11월 2일, 신청일: '21년 3월 제출기간: '20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20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20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20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p>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④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❶~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❶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❷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❸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❹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❺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관련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5명 미만
-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영 제4조 및 제7조 중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 중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으로 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

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 법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4.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5.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제3조(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 등) ① 영 제3조의3제4항에 따른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이하 "창업등"이라 한다)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등을 한 기업 : 영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창업등을 한 날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제5조(확인신청) ④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참고3

##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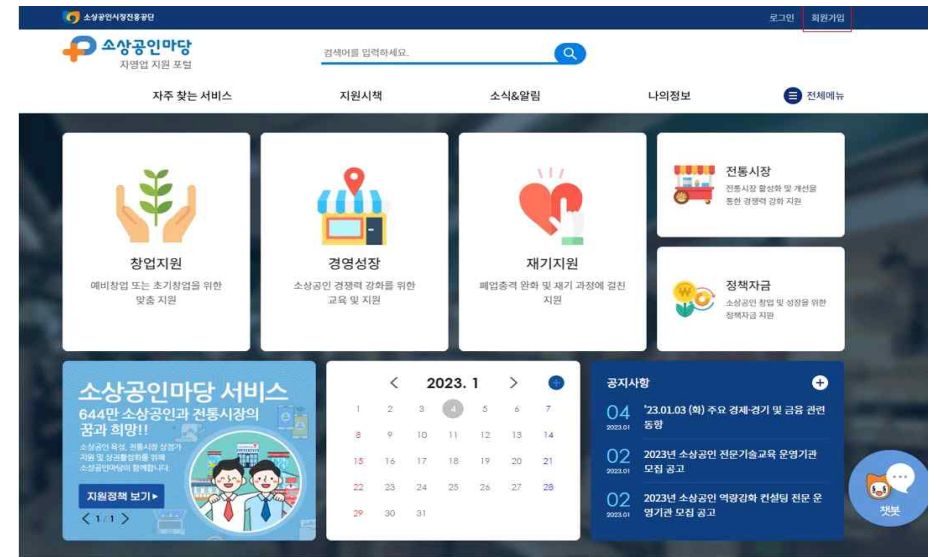
### 1

###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방법

##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온라인 신청 전, 소상공인마당사이트에 협동조합 조합원 전원의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공포'13.8.6, 시행'14.8.7일)되어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기에 휴대폰 또는 I-PIN을 통해 본인 인증 후 회원가입 필요

①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www.sbiz.or.kr)에서 '회원가입'을 클릭



② '서비스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 확인 후 동의란 체크  
(동의하지 않을 시 회원가입 불가)

**이용약관 동의**

제1장 목적  
제1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와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택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번호를 위하여 선택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패밀라 사이트"는 당 사이트가 운영 또는 제휴하고 있는 회원제 웹 사이트로서 [부칙]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패밀라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발표 공개하지 않으며, 수집된 정보는 아래와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아래의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이를 알리고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및 정책연동  
교육, 컨설팅, 희망리펀대키지, 자금, 협동조합활성도, 프랜차이즈, 나눔가게, 상권정보, 특성화시장육성, 행사, 이동차량투표조사, 이벤트, 증명발급, 게시물, 메일링서비스, SMS, 컷뷰 제공을 위하여 개인의 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 회원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가입의사 확인, 가입 및 가입횟수 제한, 후회 방지 관리인 본인확인, 부정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법처리 등 민원처리, 공지사항 전달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 항목: 이름, 회원번호(DI, DI),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회원유형(소상공인, 컨설턴트, 예비창업자 등).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다.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청부(중앙부처,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및 공동활용 기반 마련  
\* 각 기관 고유업무의 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Data 활용  
\*\*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연구, 성과분석, 통계관리 등 업무 지원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회원번호(DI, DI),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회원유형(소상공인, 컨설턴트)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합니다.

③ 원하는 인증 방법 중 택1

(휴대폰인증) 실명인증에서 '휴대폰인증'을 클릭 후 새로 뜨는 팝업창에서 통신사 선택 후 개인정보 이용 등에 동의, 휴대폰번호 및 생년월일로 실명 인증

(아이핀 활용) '아이핀'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된 아이핀(I-PIN)으로 인증  
아이핀 아이디 부재 시 신규발급 진행

**회원가입을 위한 본인인증**

**본인 인증**

본인명의 휴대폰을 이용해 인증합니다.  
나이스(NICE) 고객센터 1600-1522

**아이핀 인증**

아이핀 ID를 이용해 인증합니다.  
SC어플정보 고객센터 1577-1006

적외 광인증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4.8.7 시행, 주민등록번호포기금지)에 따라 안전정보 지출에 근거하여 본인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한 조치방향>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인증 → 휴대폰, I-PIN을 이용한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을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만 인증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 I-PIN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해 주세요.

SK telecom

kt

LG U+

알뜰폰

전체 동의  
 개인정보이용 동의     고충시별정보처리 동의  
 서비스이용약관 동의     통신사이용약관 동의

PASS로 인증하기  
문자(SMS)로 인증하기

아이핀 인증 화면

아이핀ID  
비밀번호  
문자입력

신규발급    아이핀발급신청    아이디관리    마이핀 관리

타 통신사이름 동일할 때, 비밀번호를 사용하실 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변경을 원하시면

번호변환    비밀번호재설정    아이디재설정    비밀번호 초기화

이용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고객센터    문의

④ 정상적으로 실명을 인증 시 아래와 같이 팝업창으로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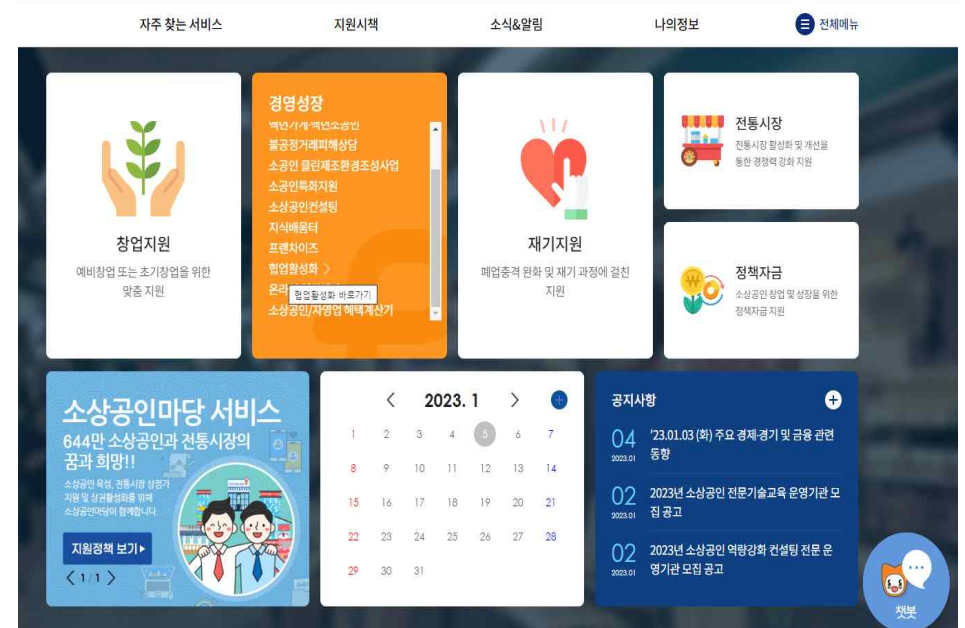
⑤ 가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소상공인 마당 회원가입 완료

## 2 사업신청 방법

★ 소상공인마당사이트 회원가입 후, 협업활성화 사이트(coop.sbiz.or.kr)에서 공동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동사업 신청을 위해서 모든 협동조합은 반드시 사전에 소상공인마당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후 협업 활성화 사이트에서 "신청 완료"하셔야 최종적으로 접수됩니다.

### 1. 소상공인마당에서 '협업활성화'(coop.sbiz.or.kr)를 클릭



2. 메인화면 상단 우측의 [로그인] 클릭 후 '로그인'



3. '사업공고'로 이동하여 사업공고 목록 조회 후 '사업신청'으로 이동하여 희망하는 사업 신청



4. 신규사업 신청

- ① 사업신청 목록에서 신청상태가 "신청전"인 사업공고의 [신청] 버튼 클릭
- ② 유의사항 및 동의사항 화면에서 내용을 숙지하고 하단의 동의서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하단 우측의 [확인] 버튼을 클릭

공통사업 신청공고 정보 조회

발행	신청상태	사업명	신청비
2021.08.04	신청전	2021	220000
2021.08.04	신청전	2021	220000



- ③ 사업신청은 자가진단, 기본정보, 사업비 정보, 조합원 정보 4단계를 구분하여 입력하며, "자가진단"에서는 자격요건별 진단결과 입력



④ 기본정보에서는 협동조합 정보 및 제출서류 첨부

-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중복체크 및 NICE 버튼을 활용하여 첨부파일을 자동으로 수신하며, 나이스에 미리 가입해서 동의한 조합 및 조합원에 한해서 NICE 정보 수신 가능
-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는 필수여부에 "필수"로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업로드 해야만 진행할 수 있으며, 필수여부가 선택인 경우 선택적으로 첨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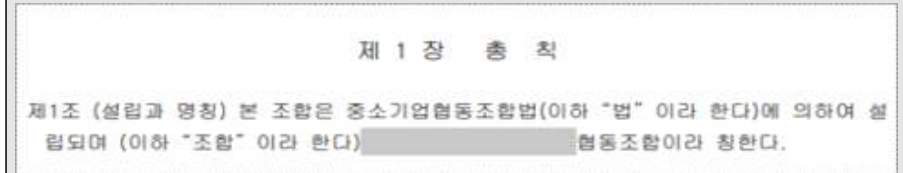
**(협업체명)** 협업체명은 협동조합 목록을 선택박스로 표시하며, 협동조합이 한 개 이상인 경우 선택 가능. 협업체가 신규조합인 경우 협업체명을 [신규]로 선택하고 협동조합 정보를 입력하면 협업체 정보가 자동 생성

**(조합구분)** 협동조합 정관 제1조를 참고하여 선택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주무관청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공동사업 신청 가능
- **일반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정관 상 이익배당에 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주무관청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공동사업 신청 가능



**(지역)** 사업자등록증 상 기재된 '협동조합의 사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 선택 (관할 센터는 자동 배정되며 임의선택 불가)

[참고] 사업자등록증명

영장번호	사업자등록증명 (법인사업자)	시/도/지/군/구
영장번호	영장번호	시/도/지/군/구
영주(법인명)	영주(법인명)	영주(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주년(법인)등록번호	주년(법인)등록번호	주년(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사업장소재지	사업장소재지
대표명	대표명	대표명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일	사업자등록일
영	영	영
주	주	주

**(기본정보) 협동조합의 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개업연월일 :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 법인등록번호 : 협동조합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법인등록번호
- 법인설립연월일 : 협동조합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법인설립연월일
- **이사장 성명 및 회원 아이디 [검색]을 통해 이사장 회원인증 후 이사장 정보 입력**
- 한국표준산업분류 :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 조회 후 표준명 클릭
- 협동조합소재지 :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
- 업태 및 종목 :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 종목 작성

**(매출액 및 영업이익) 사업개업연월일에 따라 입력항목 자동 생성**

- 자동 생성 되지 않을 경우, 가능한 정확한 데이터 입력 필요

**(사업비)** 원하는 지원항목에 체크하면 하단에 표시되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항목 (단가공급액, 수량 등) 기재

**(조합원)** 반드시 전 조합원 소상공인마당 회원가입 후, 조합원 등록 필수

- 추가할 조합원이 있을 경우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조합원 추가
- 대표 및 조합원 정보 수정 시 [수정]을 클릭하여 정보 수정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완료] 클릭하며, [입력내용검토]를 해야만 최종신청 완료

**참고4**

**제출서류 발급처**

연번	서류명	발급처
1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온/오프라인] 법원등기소, 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2	- 사업자등록증명	[온/오프라인]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3	- 소상공인 확인서	[온/오프라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http://sminfo.smba.go.kr)
4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온/오프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5	-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오프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발급 신청서' 작성 → 신분증과 함께 팩스/방문 제출
6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온/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토달서비스
7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온/오프라인] 신청업체(세무대리인) 신고서 사본 (세무대리인 또는 신청인 날인)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8	- 표준재무제표증명	
9	-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온/오프라인]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10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1	- (국세)납세증명서	[온/오프라인]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12	- 지방세납세증명서	[온/오프라인] 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민원24(www.minwon.go.kr), 위텍스(www.wetax.go.kr)
13	-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escourt.go.kr)